

『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0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0월 31일

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2년 12월 18일

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○ 위탁재산현황

▪ 건 물 명 : 구미시 금오테니스장

▪ 위 치 : 구미시 산책길 105(남통동 136-1번지 일원)

▪ 규 모 : 부지 24,966㎡, 건축면적 4,865.61㎡

건축연면적 4,997.74㎡(지하1층, 지상2층)

▪ 사 업 비 : 12,500백만원(도비 720, 시비 11,280, 특별교부세 500)

▪ 주요시설 : 테니스장 15면(실내 4면, 실외 11면) 및 부대시설

○ 운영전출금 : 연 497백만원

▪ 운영전출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 건 비	공공요금	용역비	일반운영비	시설유지비	비 고
497	340	68	51	25	13	

다. 참고사항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, 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제2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동의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, 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제23조에 따라 금오테니스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위한 동의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위탁재산 명칭, 위치, 규모, 사업비, 주요시설 등 일반 현황과 위탁시 발생하는 운영전출금 관한 사항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동의안에 따라 민간 위탁시 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,
- 아울러 민간 동호회와의 교류, 각종 대회 유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생활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